

#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 목 차

1. 운 영 기 간	2
2. 심 사 대 상 기 관	2
3. 특 별 위 원 회 구 성	2
4. 심 사 일 정 및 장 소	3
5. 관 계 공 무 원 출 석 현 황	4
6. 심 사 결 과	5

#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 1. 운영기간

- 기 간 : 2017년 12월 5일 ~ 12월 20일 (16일간)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 12. 5. ~ 12. 8.

## 2.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 16개 실·과·단, 보건소, 2개 사업소, 2개동(갈현,부림)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 3. 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이 수 진 의원
- 간 사 : 문 봉 선 의원
- 위 원 : 제갈임주 의원, 안 영 의원, 고 금 란 의원, 윤 미 현 의원
- 사무보조직원

전	문	위	원	심	명	순
전	문	위	원	김	기	태
지	방	행	정	7	문	수
속		기		사	이	해
속		기		사	신	설

#### 4. 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7. 12. 5. (화) (10 : 30)	< 운 영 계 획 서 채 택 > 세 기 획 무 과 주 민 생 감 사 실 안 전 총 활 지 원 실 도 시 총 괄 담 당 관 건 설 정 책 과 설 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7. 12. 6. (수) (10 : 00)	건 교 축 과 사 회 통 과 교 육 복 지 과 문 화 청 소 년 과 환 경 체 육 과 환 경 위 생 과 사 업 소	"	제2차 특위
2017. 12. 7. (목) (10 : 00)	정 보 통 신 과 산 업 경 제 과 회 계 무 과 총 보 건 과 보 소 목 은 물 사 업 소 2 개 동 주 민 센 터 시 설 관 리 공 단	"	제3차 특위
2017. 12. 8. (금) (10 : 00)	< 계 수 조 정 및 의 결 > < 결 과 보 고 서 채 택 >	"	제4차 특위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 시	출석공무원	장 소	비 고
2017. 12. 5. (화) (10 : 30)	< 운영 계획서 채택 > 부 시 장 세 무 과 장 기 획 감 사 실 장 주 민 생 활 지 원 실 장 안 전 총 괄 담 당 관 도 시 정 책 과 장 건 설 과 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7. 12. 6. (수) (10 : 00)	부 시 장 건 축 과 장 교 통 과 장 사 회 복 지 과 장 교 육 청 소 년 과 장 문 화 체 육 과 장 환 경 위 생 과 장 환 경 사 업 소 장	"	제2차 특위
2017. 12. 7. (목) (10 : 00)	부 시 장 정 보 통 신 과 장 산 업 경 제 과 장 회 계 과 장 총 무 과 장 보 건 소 장 맑 은 물 사 업 소 장 2 개 동 동 장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	제3차 특위
2017. 12. 8. (금) (10 : 00)	< 계 수 조 정 및 의 결 > < 결 과 보 고 서 채 택 >	"	제4차 특위

## 6. 심사결과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일	결과
1	2017- 6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 12. 8	원안 가결
2	2017- 88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 12. 8	원안 가결
3	2017- 90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2017. 12. 8	수정 가결
4	2017- 91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5	2017- 92	과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6	2017- 93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7	2017- 94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 12. 8	수정 가결
8	2017- 95	과천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9	2017- 96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0	2017- 97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수정 가결
11	2017- 98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2	2017- 99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3	2017- 100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4	2017- 101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5	2017- 102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6	2017- 10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7	2017- 104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18	2017- 66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 12. 8	원안 가결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7 - 90
----------	-----------

제출연월일 : 2017. 12. 11.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 1. 수정이유

조례 내용 중 일부 단어나 표현을 시대흐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 안 제4조(기업·단체 등의 참여) 제1항 내용 중 “출산 장려와” 를 “출산·양육지원 등” 으로 수정
  
- 안 제12조(결혼지원) 내용 중 “ 미혼남녀가 건전한” 을 “남녀가 건강한” 으로 수정
  
- 안 제14조(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내용 중
  -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가정” 을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로 수정

##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기업·단체 등의 참여)</p> <p>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u>출산 장려와</u> 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p> <p>.....</p> <p>제12조(결혼지원) 시장은 <u>미혼남녀가</u> <u>건전한</u>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p> <p>시장은 <u>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u> <u>시기에</u> 직장생활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기업·단체 등의 참여)</p> <p>① ----- ----- ----- <u>출산·양육지원 등</u> 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p> <p>.....</p> <p>제12조(결혼지원) ----- <u>남녀가</u> <u>건</u> <u>강한</u> ----- ----- -----</p> <p>제14조(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p> <p>---- <u>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u> <u>하는 자가</u>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 -----</p>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7 - 94
----------	-----------

제출연월일 : 2017. 12. 11.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현 상황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정안임.

## 2. 수정내용

- 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의 내용은 전부 삭제

##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적용범위) -----  <u>축사 · 작물재배사 · 사육장·육묘</u>  <u>장·종묘배양장·온실</u> -----.</p>	<p>제2조(적용범위)  <u>(삭 제)</u></p>
<p>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 <u>축사 · 작물재배</u>  <u>사 · 육묘장 · 종묘배양장 및 온실</u>  <u>을</u> ----- <u>법인의</u> -----</p> <p>1. ----- <u>현재</u> -----  <u>인정하며, 육묘장·종묘배양장</u>  <u>및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u>  <u>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와</u>  <u>는 관계가 없다.</u></p> <p>2. ----- <u>사</u>  <u>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u> ----  -----</p>	<p>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4조(입지) ----- <u>축사·작물재배사·</u>  <u>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을</u> ---</p> <p>1. ----- <u>. 다만, 육묘장·종묘배양장</u>  <u>및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u>  <u>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와는</u>  <u>관계가 없다.</u></p>	<p>제4조(입지)  <u>(삭 제)</u></p>

<p>3. -----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p>	<p>(삭 제)</p>
<p>제5조(구조) --- 축사·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p>	<p>제5조(구조) (삭 제)</p>
<p>1. 층수는 1층으로 하고, 처마---도 -- 이하로 하고, 관리실은 전체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한다.</p>	<p>(삭 제)</p>
<p>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사육장·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p>	<p>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삭 제)</p>

#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97
----------	-----------

제출연월일 : 2017. 12. 11.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 1. 수정이유

입양도 마음으로 낳은 출산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입양아를 포함하고, 장려금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임.

## 2. 수정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조례안)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수정안)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안 제1조(목적) 내용 중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을 “제10조 및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입양”으로, “출산장려”를 “출산·입양 장려”로,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으로 수정

###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내용 중

-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수정
- 제1호 “출산장려금”을 “출산·입양장려금”으로,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자녀출산·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입양”으로 수정

-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3.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영아와”를 “영아·입양아와”로, “영아의”를 “영아·입양아의”로 수정

#### ○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내용 중

- 제1항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신생아의 출산일”을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 “출생신고”를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로 수정

- 제2항 전단 중 “신생아의”를 “영아 또는 입양아의”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는 출산장려금”을 “경우에는 장려금”으로 수정

#### ○ 제4조(지원기준) 내용 중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출산으로 인한”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수정

-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출산장려금)”을 “300만원(장려금)”으로,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를 “1년 이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의 장려금”으로, “출산장려금 신청시 400만원”을 “장려금 신청시 200만원”으로, “200만원씩”을 “100만원씩”으로 수정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수정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

② 입양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1. 자녀수가 2명 이하 100만원

2. 자녀수가 3명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3. 자녀수가 4명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출생아” 를 “영아” 로 하고,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손위 형제자매” 를 “형제자매” 로, 같은 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둘째자녀 이상이면” 을 각각 “제1항에 따른 둘째자녀 이상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녀수에 포함하여” 로 수정

#### ○제5조(지원신청) 내용 중

- 제1항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출산장려금” 을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으로 수정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 을 “장려금” 으로 수정

- 제2항 제2호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 을 “제4조제4항 및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3.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제3항 본문 중 “출산일” 을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생아의 출생일” 을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 수정

○ 제6조(지원방법) 내용 중

- 제1항제1호 “출생신고 사항” 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수정

○ 제7조(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내용 중

- 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을 “(장려금 지원중단)” 으로 수정
  - 제1호 중 “출생아” 를 “영아 및 입양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 부칙 내용 중

- 부칙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 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으로 수정
- 부칙 제3조(적용례) “영아” 를 “영아 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입양아” 로 수정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u>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u></p>	<p><u>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을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u>출산장려</u>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u>둘째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u>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의</u> 각 호와 같다.</p> <p>1. “<u>출산장려금</u>” (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u>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u></p> <p>2. (생략)</p>	<p>제1조(목적) ----- -----<u>제10조</u> 및 「<u>입양특례법</u>」 제3조에 따라 <u>출산·입양</u> ----- <u>출산·입양 장려</u> ----- <u>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u>-----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u>다음</u> ----- -----.</p> <p>1. “<u>출산·입양장려금</u>” ----- ----- <u>자녀</u> <u>출산·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입양</u>----- -----.</p> <p>2. (현행과 같음)</p>

<신 설>

3. “신청인”이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이후 자녀에

3.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 영아·입양아와 -----  
-----  
-- 영아·입양아의 -----  
-----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려금-----  
장려금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② 영아 또는 입양아의 -----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  
-----  
----- . -- 경우에는 장려금 -----  
-----.

제4조(지원기준) ① ----- 출산으로 인한 ----- 대해서는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셋째자녀 500만원(출산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3. 넷째자녀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시 4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200만원씩 3회 지급)

<신 설>

-----  
-----.

1. (현행과 같음)
2. ----- 300만원(장려금 ----- 1년 이후 100만원 -----
3. ----- 500만원의 장려금-----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 100만원씩 -----

② 입양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1. 자녀수가 2명 이하 100만원
2. 자녀수가 3명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3. 자녀수가 4명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순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 자녀 이상이면 지급한다.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둘째 자녀 이상이면 지급하되, 지원 기간 동안 동일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영아-----  
-----.

④ 형제자매-----  
-----제1항에 따른 둘째자녀 이상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녀수에 포함하여 --.

⑤ -----  
-----  
-----  
-----제1항에 따른 둘째자녀 이상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녀수에 포함하여 ----.

제5조(지원신청) ① -----  
-----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는 장려금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생략)
2.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②·③ (생략)

② ----- 장려금-----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4항 및 제5항-----  
-----  
-----

3.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③ -----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  
-----.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  
-----.

제6조(지원방법) ① -----  
-----  
-----  
-----.

1. ----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
2. ----- 따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  
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  
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3. (생 략)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 -----  
-----  
-----.

1. 영아 및 입양아-----  
-----
2.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  
-----.

제3조(적용례) -----  
-----영아 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입양아--.